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93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박민규 · 안도걸 · 김영환
정태호 · 정일영 · 김태년
정을호 · 정춘생 · 이정문
이춘석 · 김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재수출감면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수출감면물품을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6조 및 제277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으로 한다.

2의2.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위반한 자

제277조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제97조제2항”을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으로 한다.

3. 과실로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4. 과실로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

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위신고죄 등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76조제3항, 제277조제4항 및 제27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의2. ~ 6. (생략)

④·⑤ (생략)

제277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신설>

<신설>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
-----.

3의2.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7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2. (현행과 같음)

3. 과실로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4. 과실로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p>1.·2. (생략)</p> <p>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p> <p>4.~7, (생략)</p> <p>⑦·⑧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u> ----- ----- ----- ----- -----</p> <p>4.~7, (현행과 같음)</p> <p>⑦·⑧ (현행과 같음)</p>
-----------------------------------------------------------------------------------------------------------------------------------------------------------------------------------	-------------------------------------------------------------------------------------------------------------------------------------------------------------------------